

# 변경대비표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A306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	AP73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E)	BG32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AP739

## 2. 주요 변경 내용:

### ① 투자설명서

-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모투자신탁 신설(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펀드명칭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 <b>자</b> 투자신탁1호(채권)

- 기존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② 간이투자설명서

-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모투자신탁 신설(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펀드명칭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 <b>자</b> 투자신탁1호(채권)

- 기존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③ 규약

-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모투자신탁 신설(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펀드명칭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 <b>자</b> 투자신탁1호(채권)

- 투자신탁회계기간변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3. 변경대상 서류 : 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4. 변경시행일: **2020.10.30**

## [규약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기구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 <b>자</b> 투자신탁 1호(채권)
제2조(용어의 정의)	1. ~ 9. <생략> <신설>  <신설>  <b>10.</b>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9. <좌동> <b>10.</b>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b>11.</b> “모자형” 이라 함은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로서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의 다른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투자신탁 외의 자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b>12.</b>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명칭은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6.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명칭은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 <b>자</b> 투자신탁 1호(채권)”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6. <좌동> <b>7. 모자형</b> ③ ~ ④ <좌동> <b>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b> <b>1.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b>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표시한다.</u> ② <생략>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b>발행한다.</b> ② <좌동>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 ⑤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b>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b> 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 <b>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b> 」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좌동>

<p><b>제14조(수익자 명부)</b></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한국예탁결제원</u>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한국예탁결제원</u>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lt;생략&gt;</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한국예탁결제원</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한국예탁결제원</u>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li> <li>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li> </ol>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 ⑧ &lt;생략&gt;</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u> (이하“<u>전자등록기관</u>”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전자등록기관</u>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lt;좌동&gt;</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전자등록기관</u>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li> <li>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li> </ol>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 ⑧ &lt;좌동&gt;</p>
<p><b>제16조(투자목적)</b></p>	<p>이 투자신탁은 <u>국내 채권</u>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이 투자신탁은 <u>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u>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b></p>	<p><b>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b></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b>1.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수익증권</b></p> <p>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li> <li>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제3조 제5항 제1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제17조 제2항 각 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p>
<p>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p>	<p>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5. 투자신탁재산인 <u>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u></p> <p>② ~ ④ &lt;생략&gt;</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p> <p>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 ④ &lt;삭제&gt;</p>
<p>제25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p>	<p>&lt;신설&gt;</p>	<p>집합투자업자는 고객이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이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제26조의3(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 ③ <생략>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u>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u>	① ~ ③ <좌동>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u>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u>
제27조의 4(투자신탁의 전환)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주식) 2.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② ~ ⑥ <생략>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주식) 2.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 <u>자</u> 투자신탁 1호(채권) ② ~ ⑥ <좌동>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⑦ <좌동>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생략>	① <좌동>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좌동>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u>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u> 1. 최초설정일로부터 ~ 2020년 7월 18일까지 : 매 1년 2. 2020년 7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 매 1년

<p><b>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b></p>	<p>① &lt;생략&gt;</p> <p>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lt;좌동&gt;</p> <p>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37조(수익자 총회)</b></p>	<p>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p>② ~ ⑨ &lt;생략&gt;</p> <p><u>&lt;신설&gt;</u></p> <p>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p>	<p>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p>② ~ ⑨ &lt;생략&gt;</p> <p>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p>
<p><b>제42조(기타 운 용비용 등)</b></p>	<p>① ~ ② &lt;생략&gt;</p> <p><u>&lt;신설&gt;</u></p>	<p>① ~ ② &lt;좌동&gt;</p> <p>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p>
<p><b>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b></p>	<p>① ~ ③ &lt;생략&gt;</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p>	<p>① ~ ③ &lt;생략&gt;</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통지된 날(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b></p>	<p>① ~ ② &lt;생략&gt;</p> <p>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① ~ ② &lt;좌동&gt;</p> <p>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1. ~ 5. &lt;생략&gt;  <b>6. &lt;신설&gt;</b></p>	<p>1. ~ 5. &lt;좌동&gt;  <b>6.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b></p>
<p><b>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b></p>	<p>① ~ ② &lt;생략&gt;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b>&lt;신설&gt;</b></p>	<p>① ~ ② &lt;좌동&gt;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p>
<p><b>제52조(공시 및 보고서 등)</b></p>	<p>① &lt;생략&gt;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④ &lt;생략&gt;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lt;생략&gt;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lt;중략&gt;---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lt;중략&gt;---그에 따라야 한다.</p>	<p>① &lt;좌동&gt;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u>)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④ &lt;좌동&gt;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 (<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lt;좌동&gt;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lt;중략&gt;---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lt;중략&gt;---그에 따라야 한다.</p>

	다. ㉑ ~ ㉒ <생략>	㉑ ~ ㉒ <좌동>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 가. 주요 정정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b>자</b> 투자신탁 1호(채권)
모자형투자신탁으로 변경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전환형,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전환형, 종류형, <b>모자형</b>

## 나. 정정내용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모자형전환에 따른 명칭변경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b>자</b> 투자신탁 1호(채권)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공채 위주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li> <li>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90% 이상을 <u>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u>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공채 위주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li> <li><u>모투자신탁은</u>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 합니다.</li> </ul>
분류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전환형,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전환형, 종류형, <b>모자형</b>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전환형 집합 투자기구>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u>*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 으로, 해당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은 모두 자신탁 내용 기재</u>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표시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 종류형 :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 능한 집합투자기구) <u>&lt;신설&gt;</u>	- 종류형 :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 능한 집합투자기구) <u>-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 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 신탁)</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 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증권투자신탁(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전 환형, 종류형	증권투자신탁(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전 환형, 종류형, <u>모자형</u>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나. 전환형 구 조 전환가능 투자 신탁명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u>*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 으로, 해당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은 모두 자신탁 내용 기재</u>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라. <신설>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u>&lt;신설&gt;</u>	<u>라. 모자형 구조 &lt;별첨1&gt;</u>
7.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목적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공 채 위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 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자금 형성 을 목적으로 합니다.	<u>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90%이상 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 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 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 로 국공채 위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 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자 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u>
8.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u>&lt;신설&gt;</u>	<u>&lt;별첨2&gt;</u>
나. 투자제한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u>&lt;신설&gt;</u>	<u>&lt;별첨3&gt;</u>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나. 위험관리</p>	<p>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p>	<p>가. 투자전략 (1) 채무증권/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매경BP종합*90%+MMI Call*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1)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만기구조 비중 조절을 통한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2) 신용위험 관리방안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3)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p>	<p style="text-align: center;"><u>&lt;별첨4&gt;</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t;중략&gt;---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u>&lt;신설&gt;</u></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t;중략&gt;---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u>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u></p>
<p>11. 매입, 매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p>	<p>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p>	<p>(1) ~ (2) &lt;생략&gt; &lt;신설&gt;</p>	<p>(1) ~ (2) &lt;좌동&gt; <u>※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p>	<p>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및 기타 정정</p>	<p>(1) ~ (2) &lt;생략&gt; &lt;신설&gt;</p> <p>(4) ~ (5) &lt;생략&gt;</p> <p>(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p> <p>(7) ~ (8) &lt;생략&gt;</p>	<p>(1) ~ (2) &lt;좌동&gt;</p> <p><b>※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b></p> <p>(4) ~ (5) &lt;좌동&gt;</p> <p>(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p> <p>(7) ~ (8) &lt;좌동&gt;</p>
<p>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p>	<p>기타 정정</p>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u>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u>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u>파생상품시장에서</u>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p>	<p>주1) ~ 주2) &lt;생략&gt; &lt;신설&gt;</p> <p>주3) ~ 주4) &lt;생략&gt; &lt;신설&gt;</p>	<p>주1) ~ 주2) &lt;좌동&gt;</p> <p><b>*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b></p> <p>주3) ~ 주4) &lt;좌동&gt;</p> <p>주5) 총보수·비용 비율(피투자집합기구 보수 포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p>

		<p>주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p><u>&lt;신설&gt;</u></p>	<p>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p><b>■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lt;별첨5&gt;</b></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p>(가) ~ (나) &lt;생략&gt;</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가) ~ (나) &lt;좌동&gt;</p> <p>(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 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p> <p>(라)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p>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i) &lt;생략&gt;</p> <p>(ii)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u></p> <p>(iii) &lt;생략&gt;</p> <p>(나) ~ (다) &lt;생략&gt;</p>	<p>(i) &lt;좌동&gt;</p> <p>(ii)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u></p> <p>(iii) &lt;좌동&gt;</p> <p>(나) ~ (다) &lt;좌동&gt;</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 보고서</p>	<p>-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나)~ (다) &lt;생략&gt;</p> <p>(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p>	<p>(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나)~ (다) &lt;좌동&gt;</p> <p>(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나) &lt;생략&gt;</p> <p>(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lt;생략&gt;</p>	<p>(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나) &lt;좌동&gt;</p> <p>(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lt;좌동&gt;</p>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모자형전환에 따른 명칭변경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b>자</b> 투자신탁 1호(채권)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p>•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공채 위주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p> <p>•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 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u>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u>'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공채 위주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p> <p>•<u>모투자신탁</u>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u>조절하여 투자•운용</u> 합니다.</p>
<b>분류</b>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전환형,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전환형, 종류형, <b>모자형</b>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전환형 집합 투자기구>	모자형전환에 따른 변경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u>*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해당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은 모투자신탁 내용 기재</u>

**<별첨>**

**<별첨 1>**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모투자신탁</b>	
자투자신탁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호 (채권)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 투자대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
	투자목적	국공채 위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
	비교지수	매경 BP 종합*90%+MMI Call*10%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 · 운용

**<별첨 2>**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 비율	주요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 집합투자규약 제3조 제5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유동성자산	10% 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계정대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6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6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 비율	주요내용
채권	60% 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어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금리스왑거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 투자목적: 헤지 및 헤지외목적
집합투자증권등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단,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까지 투자 - 투자목적: 헤지 및 헤지외목적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 투자신탁자산 자산총액의 20% 이하
은행계정대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주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li> <li>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p>주2) 상기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예외기간을 둡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li> <li>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li>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ol>
---

**< 별첨 3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투자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li> <li>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li> </ol>
동일종목 투자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li> <li>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li> </ol>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b>집합투자증권 투자</b>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b>파생상품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li> </ul>
<b>계열회사발행 증권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li> </ul>
<p>주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4호 내지 제9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히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li> <li>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li> <li>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li> <li>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li> <li>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li> </ol> <p>주2) 집합투자규약 제17조 제2호 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주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별첨 4>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매경BP종합\*90%+MMI Call\*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국공채 위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채무증권/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매경BP종합\*90%+MMI Call\*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위험관리 전략을 수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만기구조 비중 조절을 통한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2) 신용위험 관리방안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3)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 우량 CP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별첨 5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	-	-
지급 시기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